

**2022년 농업정책보험금융원 종합감사 결과  
공개문**

**2022. 7.**



**농림축산식품부  
감사관실**

# I. 감사실시 개요

---

## □ 감사근거

- 「공공감사에 관한 법률」 제19조(자체감사계획의 수립·실시) 및 제21조(실지감사)의 규정

## □ 감사목적

- 농업정책보험금융원의 주요 사업과 조직·인사·예산 등 업무 전반에 대한 적법성과 타당성을 점검하여 문제점을 시정하고, 개선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기관 운영의 건전성 및 효율성 확보

## □ 감사기간 및 인원

- (기간) 2022. 2. 14. ~ 2022. 3. 4.
- (인원) 감사담당관 외 6명

## □ 감사대상

- 농업정책보험금융원

## □ 감사범위

- 최근 3년간(2019~2021)의 기관 운영, 사업 추진 등 업무 전반에 관한 사항

## II. 감사결과

1	농식품경영체 투자유치 지원사업 추진 부적정		
처분요구	통보(2)	조치기관	농업정책보험금융원 (투자운용본부)

- 2020~2021년 「농식품경영체 투자 전 지원사업 추진계획」에 따르면 농식품모태펀드로부터 투자를 받지 않은 농식품경영체의 경우 농식품펀드 운용사가 참여하는 사업설명회(IR)에 연 1회에 한해 참여할 수 있으나,
  - 헬썸(주) 등 4개 농식품경영체는 같은 해 2회 사업설명회에 참여하였고, 농식품모태펀드 투자를 받은 (주)베지스타 등 2개 경영체는 위의 사업설명회 지원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데도 참여하였음
- 다만, 일반적인 사업설명회가 아닌 특수목적 펀드가 주관하는 사업설명회까지 포함하여 연 1회로 제한하는 것은 다소 과도한 측면이 있음

### 농업정책보험금융원장

- ① 사업설명회(IR) 참여 지원 시 농식품경영체의 연간 수요, 특수목적펀드 활성화 등을 고려하여 경영체별 참여횟수 제한을 완화하는 등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.시행 요구 (통보)
- ② 농식품경영체 투자유치 지원사업 추진 시 사업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경영체에 대하여 지원하는 일이 없도록 관련 직원에 대한 교육 등 조치 요구 (통보)

2	농식품투자조합 운용사 선정 우대기준 적용 미흡		
처분요구	통보	조치기관	농업정책보험금융원 (투자운용본부)

○ 2019~2021년 농식품부의 농식품모태펀드 운용지침에 따르면 농식품투자조합 운용사 선정시 농업경영체(농업인 및 법인)에 전문적으로 투자하는 경우 우대(가점)하도록 하고 있음에도,

- 농금원은 위와 같은 우대사항을 반영하지 않고 농식품투자조합 운용사를 선정하였음

\* 지난 12년간(2010~2021) 농식품투자계정 투자금액 총 8,960억 원 중 농업법인에 대한 투자금액 1,074억 원(12.0 %)

### 농업정책보험금융원장

농식품투자조합 운용사 선정시 농림축산식품부의 농식품모태펀드 운용지침에서 정하고 있는 선정 우대조건을 준수하여 농식품모태펀드 운용계획을 수립하고, 운영사를 모집하는 등 관련업무를 추진토록 요구 (통보)

3	특수목적의 농식품투자조합 결성 및 운용근거 마련 필요		
처분요구	권고	조치기관	농업정책보험금융원 (투자운용본부)

○ 농금원은 농식품부 농식품모태펀드 운용지침에 따라 농식품산업 전반에 걸쳐 투자하는 '일반펀드'보다 정부 정책달성과 공공성 강화 등을 위한 '특수목적펀드'에 투자비중을 확대하고 있음

- 특수목적 '창업보육펀드'(사업초기 농식품경영체 발굴.보육)와 '세컨더리펀드'(타 펀드 출자.지분 인수로 투자 선순환 구조 마련)를 2021년 새롭게 도입
- 모태펀드를 특수목적펀드에 출자할 경우 「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 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결성하는 농식품투자조합에 출자하는 것이 바람직하나,
  - 2021년도 '창업보육펀드'와 '세컨더리펀드' 운용사 선정 시 농식품투자조합이 출자할 수 있는 근거가 미흡하여 부득이 「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벤처투자기업 등 타 법에 근거한 투자조합을 선정함
- 그런데, 타 법에 근거한 투자조합이 관계 법령 등을 위반하는 경우 해당 부처에 관련내용 통보에 그칠 수밖에 없는 등 선량한 관리에 제약이 예상됨

#### 농업정책보험금융원장

「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 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농식품투자조합이 특수목적펀드를 결성, 운용하는데 제한을 받는 일이 최소화되도록 출자근거 마련 등 합리적인 개선 요구 (권고)

4	계약업무 추진 부적정		
처분요구	개선, 통보(2)	조치기관	농업정책보험금융원 (투자운용본부)

- 농금원은 농식품기업의 투자자금 조달을 위해 농식품 크라우드펀딩 활성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, 사업 수행을 위한 위탁 용역업체를 선정하면서,
  - 「계약규정」에 제안서 평가 방법을 정하지 않은 채 제안서(기술평가) 점수 산출을 평가위원 평가점수의 평균으로 결정하겠다고 공고에 명시하였으나, 공고와 달리 평가위원의 최고점·최저점을 제외한 평균으로 제안서 점수를 산출하였음
- 또한, 「국가계약법」에 따른 협상에 의한 계약을 추진하는 경우 '(계약예규)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'에 따라 제안서 평가 종료 후 위원별·항목별 평가점수를 공개하여야 하나,
  - 농식품 크라우드펀딩 활성화 사업 위탁 용역업체 선정을 위한 9건의 제안서 평가 결과를 공개하지 않았음

#### 농업정책보험금융원장

- ① 「국가계약법」에 따른 협상에 의한 계약의 제안서 평가점수 산출 기준을 「계약규정」에 명확히 하도록 조치 요구 (개선)
- ② 제안서 평가 방법 등을 공고한 경우 공고대로 이행될 수 있도록 관련 직원에 대한 교육 등 조치 요구 (통보)
- ③ 협상에 의한 계약을 위한 제안서 평가 결과를 공개하도록 관련 직원에 대한 교육 등 조치 요구 (통보)

5	농식품 모태펀드 운용 관련 지침 미흡		
처분요구	개선(2)	조치기관	농업정책보험금융원 (투자심사부, 리스크관리부)

- 농금원은 「농식품투자모태조합 투자관리지침」에 따라 농식품투자모태조합의 자산을 농식품경영체에 투자할 목적으로 하는 조합(이하 “자펀드”라 함)을 결성하기 위해 업무집행조합원(운용사) 선정 공고를 하고 있으나,
  - 투자심의위원회에서 제안서 평가 결과 우선순위자를 자펀드 업무집행조합원으로 선정하지 않을 경우 공고를 다시 할 것인지 아니면 차순위자에게 선정 기회를 부여할 것인지를 정하지 않음
- 또한, 농금원은 「리스크관리지침」에 따라 업무집행조합원이 규약을 위반한 경우 자펀드에 대한 실태조사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,
  - 자펀드 자산운용 위험관리(조기경보시스템)에 따라 업무집행조합원의 규약위반 우려를 인지하더라도 업무집행조합원에게 알리고 우려를 해소하도록 조치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음

#### 농업정책보험금융원장

- ① 투자심의위원회의 표결심의 부결로 업무집행조합원이 탈락한 경우 후속 조치 방안을 「농식품투자모태조합 투자관리지침」에 마련 요구 (개선)
- ② 자산운용 중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사전에 인지한 경우 이를 통보 조치할 수 있는 방안을 「리스크관리지침」에 마련 요구 (개선)

6	개인정보 보호지침 내용 부적정		
처분요구	개선	조치기관	농업정책보험금융원 (경영기획실)

- 개인정보 보호 업무를 담당하는 자가 지켜야 할 「개인정보 보호지침」은 상위규정인 「개인정보 보호법」 및 「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」을 준용하여야 하나,
  -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경우 상위규정에는 즉시 파기하도록 정해진 반면 농금원은 5일 이내에 파기한다고 규정함으로써 상위규정에 위배되게 운영함
  - 또한, 개인정보가 유출되었음을 알게 되었을 경우 지체없이 정보주체에게 알리도록 정한 상위규정과 달리 5일 이내에 알리도록 명시하는 등 상위규정과 맞지 않게 운영하고 있음

**농업정책보험금융원장**

개인정보 보호지침에서 정한 개인정보 파기, 유출 통보, 정정·삭제 등의 처리기한을 상위규정인 「개인정보 보호법」에서 정한 처리기한과 일치되도록 개정 요구 (개선)

7	직장 내 성희롱·성폭력 및 괴롭힘 예방지침 부적정		
처분요구	개선	조치기관	농업정책보험금융원 (경영기획실)

- 농금원은 성희롱·성폭력 예방지침과 직장 내 괴롭힘 예방지침을 각각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으나,



- 성희롱·성폭력 발생 시 처리 절차 등을 명확히 정하는 등 상위규정에 맞게 동 지침을 개정할 필요가 있으며,
- 직장 내 괴롭힘 예방지침의 경우 「근로기준법」 제76조의2 및 76조의3 등에서 정한 규정을 인용하고, 직장 내 괴롭힘 가해자에 대한 징계 규정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
- 아울러 기관 규모 등 현실에 맞게 성희롱·성폭력 예방지침과 직장 내 괴롭힘 예방지침에서 각각 정하고 있는 고충상담직원을 통합 운영하는 등 인력관리의 효율성 제고가 필요함

### 농업정책보험금융원장

‘성희롱·성폭력 예방지침’과 ‘직장 내 괴롭힘 예방지침’을 상위규정과 실정에 맞게 개정하고, 직장 내 괴롭힘 가해자에 대한 징계 규정을 마련하도록 요구 (개선)

8	농업정책자금 융자금 검사 미흡		
처분요구	통보	조치기관	농업정책보험금융원 (정책자금관리실)

- 농금원은 「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」에 따라 융자 및 이차보전과 관련된 농식품 사업자금의 검사 및 사후관리 지도업무를 수행하면서 부정수급 사유 등의 사실을 확인한 때에는 대출금 회수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으나,
- 농어촌공사와 유통공사가 직접 취급하여 융자한 자금에 대해서는 별도의 검사를 하지 않고 있음

**농업정책보험금융원장**

한국농어촌공사가 집행하는 농지관리기금,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가 집행하는 농안기금의 용자금 적정성 검사에 필요한 규정을 현행화하고 관련 규정에서 정한 검사를 시행하도록 요구 (통보)

9	<b>농업정책자금에 대한 상시관리 시스템 구축</b>		
처분요구	통보(모범사례)	조치기관	농업정책보험금융원 (정책자금관리실)

- 농금원 정책자금관리실은 농업정책자금의 부정수급을 예방하고 부정수급 발생 시 조기에 정상화할 수 있도록 노력
  - 정책자금 대출한도 산정을 위한 소요경영비 심사 시 농업경영체등록 시스템(Agrix)의 농업정보가 대출심사시스템에 자동으로 수신되도록 함으로써 대출취급기관 담당자의 임의입력으로 인한 대출한도 과다 산출 문제점을 방지
  - 또한, 한국신용정보원의 사망자 정보를 연계한 ‘사망자 사후관리 시스템’을 구축함으로써 사망채무자 대출계좌에 대한 즉각적인 대출금 회수가 가능하게 하는 등 관리체계 강화

**농업정책보험금융원장**

농업정책자금의 부정수급을 예방하고 부정수급을 조기에 발견하여 정상화할 수 있도록 농업정책자금 상시관리 시스템 구축에 기여한 직원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표창 대상으로 선정하여 추천 (통보, 모범사례)